

의안
번호

916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2. 7. 2.(월)
- 제출자 : 정현희 의원 외 3명
- 위원회회부 : 2012. 7. 4.(수)
- 위원회심사 : 2012. 7. 16.(월)

2. 개정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대형마트)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

- ▶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(안 제13조의2제1호)
- ▶ 의무휴업일은 중구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함(안 제13조의2제2호)

4. 근거법령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
-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”라고 되어 있습니다.
- 오늘 심의할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.
-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보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 점포에 관한 규정과 무슨 목적으로 그러한 부담을 지우는지에 대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. 그 목적은 건전한 유통질서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제2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영업시간제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과 영업시간제한 범위를 0시에서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.
- 제3항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

- 과 의무휴업일은 2일까지 범위를 제한하는 기속적이면서도 또한 한 달 중 2일을 어느 특정한 날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- 제4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임받은 재량행위를 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입니다.
 - 다시 정리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재량을 부여하는데 법 제1항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한 필요한 사항(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세부적인 절차, 방법, 기준 등으로 표현함)을 반영하고 지켜서 영업시간제한 범위와 의무휴업일을 결정하고 행정처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.
 - 그러면 오늘 심의할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한 건이 접수되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, 유통산업발전법 제4항에서 규정한 “필요한 사항”에 대한 규정은 없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조례로 정한 내용만 있습니다.
 - 의원님들께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